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자동차보험

제작부서 : 자동차보험업무팀

상품명 : 영업용자동차보험

[준법감시인확인필]-[C3202]-CP-240620-01

영업용자동차보험

2024.07.01 발행

보험약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타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688 - 1688
 - 서 면 : 본사(서울 중로구 새문안로68(신문로1가) 흥국화재) 또는 각 영업점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파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688 - 1688
 - 인 터 넷 : www.heungkukfire.co.kr
 - 서 면 : 본사(서울 중로구 새문안로68(신문로1가) 흥국화재) 또는 각 영업점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688 - 1688
 - 인 터 넷 : www.heungkukfire.co.kr
 - 서 면 : 본사(서울 중로구 새문안로68(신문로1가) 흥국화재) 또는 각 영업점
- 마.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 명 : 허금윤(준법감시인) - 전화번호 : 02-2002-6884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 1가), 흥국화재
- 금융감독원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전화번호 :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전화번호 : 02-3702-8500
 - 주 소 : 서울시 중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B동 15층

영업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약관은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 CONTENT

가 입 대 상
사업용 자동차

- 가입자 유의사항 3
- 주요내용 요약 5
- 자동차보험 Q & A 7
-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9
 - 세부목차 참조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33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46
 -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48
 - <별표 4> 과실상계 등 49
 -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50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보통약관 제22조 제2항 및 제26조 제5항 관련) 50
- 영업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51
 - 세부목차 참조
 - 별첨1. 관계법령 86
 - 별첨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01

약관 본문에 등장하는 항목체계의 표기법과 읽는 법

항목체계	표기법	읽는법
항	① / ②	제1항 / 제2항
호	1. / 2.	제1호 / 제2호
목	가. / 나.	가목 / 나목

가입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사항

1. 보험료는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자	자동차
- 나이, 성별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 교통법규위반경력 - 사고발생 여부 등	- 차종, 모델 - 차량연식, 배기량 - 안전장치, 부속품 등

2. 운전 가능 범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하신 운전자 한정운전/연령 한정운전 특약에서 정하는 운전자 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청약서,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필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과 청약서(계약자용)를 받으셔야 합니다.

4. 가입한 상품의 내용과 주요 면책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후 회사에 알려주셔야 할 사항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 새 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 자동차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콜센터 (1688-1688)로 알려주세요!

※ 알려주시는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사항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1. 차량 정지 후 부상자 구호
 - 사고가 나면 최대한 빨리 정지 후 사고 확인
 - 부상 상태 확인 후 응급조치 및 119 신고
2. 사고 표시 및 정황증거 확보
 -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 촬영
 - 사고 구역 표시 및 목격자 확보
3.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 정황증거 확보 후 안전한 장소로 차량 이동
4. 경찰서 신고 및 보험회사 사고접수
 -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

보험처리 절차

1. 사고통보
 - 콜센터 : 1688-1688
 - 피보험자 성명,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사고일자, 장소, 사고내용 등을 통보
2. 사고접수 및 담당자 배정
 - 사고상당 및 안내, 보상서비스 담당자를 지정
3. 사고조사
 - 사고경위, 과실여부 등 사고내용 파악
4. 피해상황 확인
 - 피해자 치료과정, 피해물 수리과정 확인
 - 합의금, 수리비 등 피해액 산정
5.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치료비 / 수리비 / 기타 손해액 지급
6. 보험처리 종결 안내
 -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상처리 과정 안내

주요내용 요약

자동차보험의 구성 및 주요담보 안내

1.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가입담보
의무보험*	대인배상 I, 대물배상(가입금액 2천)
임의보험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 손해)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자기차량 손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주요내용
대인배상 I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 II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 부상, 후유 장애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으로 가입하면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차대차사고 및 도난에 한정)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차량 단독사고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의 주요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약관의 보상 내용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보상을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일에 대비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더욱 폭넓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주요내용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상시고정*)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 휴대전화 또는 휴대용PC 등의 기기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리운전자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대리운전을 의뢰한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p>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p>	<p>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요청하여 처리 받을수 있는 특약입니다. ①긴급견인(10km 초과시 개인부담) ②비상급유(1일당 1회에 한정) ③배터리충전 ④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⑤잠금장치해제 ⑥라지에이터캡 교환 ⑦휴즈교환 ⑧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⑨무상점검 ⑩부동액보충 ⑪긴급구난 ⑫기타부가</p>
---------------------	--

자동차보험 Q & A

1.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나요?

-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자동차! 이러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신체(재물)에 손해(손해)를 입힌 경우 충분히 보상해줄 능력이 없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보험의 담보사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과 피보험자가 담보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II, 대물배상과 피보험자 자신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긴급 출동서비스로 구분됩니다.

3. 의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자동차 소유자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2천만원)까지를 의미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그럼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지 않나요?

- 이는 국가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보상한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합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여 손해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5.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계약자분께서 납입해주시는 보험료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에 의해 산출 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차량정보, 가입담보, 특약 등 여러 요소들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6.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여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여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부부한정,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 가족한정, 가족 및 형제자매한정 특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각 특약별 운전자 기준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면서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 연령한정은 주민등록증상 나이 기준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음주운전, 마약 악물운전, 무면허운전 중 사고 발생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시 보상 받을 수는 있나요?

-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사고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담보		음주운전, 마약 악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보상여부	사고부담금	보상여부	사고부담금	보상여부	사고부담금
대인배상 I		보상	지급보험금 전액	보상	지급보험금 전액	보상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II		보상	1억원	보상	1억원	보상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손해	보상	지급보험금 전액	보상	지급보험금 전액	보상	지급보험금 전액
	2천만원 초과손해	보상	5,000만원	보상	5,000만원	보상	5,000만원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보상	-	보상	-	보상	-
자차		미보상		미보상		보상	

8.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은 무엇 인가요?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운전자와 그 가족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장애)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나,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9.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의 차량가액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 자동차의 차량가액은 매분기(3개월)마다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차량가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차량가액은 사고발생 당시의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 자동차를 관리 중에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도난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의 일부 부품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일부 도난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추가 부속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1. 자기차량손해(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자기부담금은 무엇인가요?
-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일정금액 이하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이는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12. 자동차보험은 가입만하면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나요?
- 자동차보험보험 가입 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 전/후로 계약자께서 알릴의무를 위반하셨을 경우, 보험계약은 체결이 되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자동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 또는 대체 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 자가용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신 경우,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을 가입하시고 운전자 연령 한정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하신 경우,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3.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 교통사고는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통한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일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에 표시하거나,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긴급처리가 끝나시면 필요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적절한 안내 및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14.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자동차보험 청약서와 보험료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즉 운전자의 범위,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 피보험자 및 계약자 사항,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 및 추가 부속품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수일 이내에 증권과 약관도 수령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계약사항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로 인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새 차를 구입하였거나 교체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운전하는 사람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을 경우, 부속품 등이 추가되는 경우, 기타 변경 사항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가 현격하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흥국화재 홈페이지(www.heungkukfire.co.kr)에서 확인하시거나 대표번호(16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CONTENT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2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14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15
제4조(피보험자)	15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5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16
제7조(피보험자)	16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6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17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7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18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18
제13조(피보험자)	18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9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9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9
제2절 자기차량손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20
제18조(피보험자)	20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0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21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1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2
제22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23
제23조(제출 서류)	23
제24조(가치금급의 지급)	24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5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5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25
제27조(제출 서류)	25
제28조(가치금급의 지급)	26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9조(보험금의 분담)	26
제30조(보험회사의 대위)	27
제31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7
제32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27
제33조(공탁금의 대출)	28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4조(보험계약의 성립)	28
제35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28
제36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인내자료 등의 효력)	29
제37조(청약의 철회)	29
제38조(보험기간)	30
제39조(사고발생지역)	30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0조(계약 전 알릴 의무)	30
제41조(계약 후 알릴 의무)	30
제42조(사고발생 시 의무)	31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3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31
제44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31
제45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32
제46조(보험계약의 취소)	32
제47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33
제48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33
제48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33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34
제50조(보험료의 환급 등)	35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1조(약관의 해석)	36
제52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36
제53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36
제54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36
제55조(보험사기행위 금지)	36
제56조(분쟁의 조정)	36
제57조(관할법원)	36
제58조(준용규정)	37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금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참고-1)}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콜린1)}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참고-2)}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참고-3)}
 -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장착^(*)1) 또는 정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4)에 의해 자동차에 장착^(*)1)하거나 정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5)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감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정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2 정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1-1) **요율**이란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말합니다.
- 1-2)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별첨1. 관계법령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릅니다.
- 1-3)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이 「대인배상 I」만 가입한 자동차도 무보험 자동차에 포함되며, **공제계약**이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협동조합 등)와 공제계약자(원칙적으로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공제계약자에게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급부를 약속하는 유상계약을 말합니다.

- (*4) 법령이란 자동차관리법 3장 제29조를 뜻하며 별첨1.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금지되어 있는 물건이란 자동차운행에 있어 본인 및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준밖기를 초과한 램프등, 번호판 가림장치 등을 말합니다.
- 7. **운전(조종)**^{참고1-4)}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별첨1)})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해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참고1-4)}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별첨1)})
-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별첨1)}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별첨1)})
-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락수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참고1-5)}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을 말합니다.
-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참고1-6)}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참고1-7)}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참고1-8)}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도 또는 전용의류^(*)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1-4)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의되는 공간에서 차(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의되는 행위로 정소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 1-5) **피용자**란 고용주(사용자)로부터 일지역의 보수를 받고 노동이라는 일종의 경제가치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호한 고용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1-6) 사용자란 근로자(피용자)에게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즉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란 기명피보험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또는 감독하는 관계의 사람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가 기본이 됩니다.
- 1-7) **법률상의 배우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를 말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1-8)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착용하거나 지니는 물품 중에서 위 가.휴대품에서 열거하여 명시한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르는 휴대품을 제외한 휴대가능한 물품은 약관에서 열거한 바에 따라 소지품으로 규정됩니다.

- (*1) 예 :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 (*2) 장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3)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안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 가액표(적용 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19. 미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5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별첨1}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적용보험료 계산 예시>

적용 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특별요율	×	사고특성요율

주) 대물배상 기준이며 담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별첨1)}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 등 동법 제2조^{별첨1)}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참고4-1)}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별첨1)}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참고5-1)}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4-1)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5-1) 예시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 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란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참고7-1)}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참고8-1)}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참고2-2)}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참고6-3)}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참고6-3)}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7-1) **업무상 위탁**이란 자동차 취급업자가 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8-1) **사변**이란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어서 병력을 사용하게 되나 전쟁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난리를 말하며, **폭동**이란 군중 또는 다수집단의 행동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있어서 현저하게 평온이 저해되고,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로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며, **소요**란 폭동에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8-2) **늘어난 손해**란 약산상 지급기준 또는 법원의 판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예를 들면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 및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법률상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늘어난 손해의 입증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 8-3) 업무 중 사고 또는 그와 유사한 사고로 피용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만약, 해당 피용자가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부분을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분에 한정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신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부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인한 손해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 및 제3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참고10-1)}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 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참고10-2)}(자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참고10-3)}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10-1) **비용**은 가입금액 등과 상관없이 지급해드리지만, 비용 역시 보험금의 항목이기 때문에 약관상 지급보험금의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산한 비용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등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합니다.
- 10-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소송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금액 대신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할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지급합니다.
- 10-3) 사고발생 손해가 제3자의 위법행위 또는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제3자 및 연대책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대위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통상 채권보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채권보존 절차는 피보험자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관리보존과 행사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비용(**유익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 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2)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2) '감가상각'이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실되는 물건의 가치감소분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 II」: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제7조 제1호의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제1호 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참고13-1)}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13-1) '피보험자의 부모'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자녀'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참고14-1)}
2. 손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참고14-2)}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기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참고15-1)}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참고15-1)}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참고15-1)}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참고16-1)}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 포함)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참고16-2)}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참고16-3)}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14-1)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당해 피보험자에 대하여만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기명피보험자가 배우자 및 자녀를 태우고 운행 중 지살을 시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만 보상하지 않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4-2)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자(악의의 수역자 또는 상속자)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시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기명피보험자가 배우자 및 자녀를 태우고 운행 중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명피보험자의 지분은 제외한 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 15-1)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보상액의 최고 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부상, 후유장애 발생시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에서 정한 비에 따라 사망(후유장애) 및 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 정도별(부상/후유장애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6-1)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전부과실 사고(단독사고 등)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해 약관에서 정하는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실제손해액 아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보험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6-2) **과실상계**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16-3)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배상 1·II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가 경합(중복) 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인배상 1·II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 피해 실제손해액이 100만원(과실 : 피보험자 40%, 제3자 60%)
 - 대인배상 1·II : 100만원 * 60%(본인과실 제외, 즉 제3자 과실) = 60만원
 - 자기신체사고 : 100만원(실제손해액) + 0원(비용) - 60만원(공제액) = 40만원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참고16-4})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자기차량손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사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 가. **다른자동차^{참고17-1}**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단, 전부도난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16-4) **정부보장사업** : 정부에서 보유불령(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합니다.

17-1) **다른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참고19-1)}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참고19-2)},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품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
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참고19-3)}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
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	----------------	---	-----	---	-----------------
 2. 위 제1호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합니다.
 - 가.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참고20-1)}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품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품품의 감가상각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19-1)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는 보험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진 및 분화**(화산재, 용암, 수증기 등을 내뿜는 일)로 인해 발생한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19-2) **마멸**이란 갈려서 닳아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 19-3)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서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는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기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 **잔존물**이란 보험사고 처리 후 남아있는 피보험자동차 등 보험목적물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수리하며 교환된 부품품 등에서 자산적 가치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가 제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피보험 자동차의 단독사고(기해차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통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3. 위 제1호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위 제1호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참고20-2)}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5.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응품을 주는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20-2)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사고를 말합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2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참고22-1)}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참고22-2)}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참고22-3)}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참고22-4)}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3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22-1) **7일 이내**란 보험금액이 최종 확정된 날(0시 기준)로부터 계산하여 주말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단,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평일로 함)
- 22-2) 정당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이 지연되는 경우로는 예를 들어 추가적인 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누락으로 보험사고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합니다.
- 22-3) **연 단위 복리**란 이자 계산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 원금 : 100원 / 이자율 : 연 10%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 22-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비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1. 보험금 청구서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충할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 증명서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정 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정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정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 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제24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한24-1)}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
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
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
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
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24-1) **가지급금**이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약
관에 따라 산출한 지급금액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5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참고25-1)}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참고25-2)}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참고26-1)}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참고26-2)}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참고26-3)}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일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7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1·II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경도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25-1) **손해배상청구권자**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25-2) 피보험자는 사고시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유무(有無) 또는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주장(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26-1)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란 아무런 근거 없이 사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손해액 입증 자료 등의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불리함을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 등 과실비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26-2) **갈음**이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이라는 우리말로써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 26-3) **정기금**이란 손해배상액 등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28조(가지금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금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금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금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금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금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금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금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금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금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금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금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금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금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부담 등

제29조(보험금의 부담)

「대인배상 1-1」,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부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참고29-1)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1」, 「대인배상 11」,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 지급합니다. 참고29-2)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29-1) <예시>

- 피보험자가 A, B보험계약을 동시에 가입한 후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손해액 400만원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A보험계약 400만원, B보험계약 100만원
 - 각 보험계약의 부담액
- $$A\text{보험계약} : 400\text{만원(피해자 손해액)} \times 400\text{만원(A보험계약 가입금액)} / (400\text{만원} + 100\text{만원}) = 320\text{만원}$$
- $$B\text{보험계약} : 400\text{만원(피해자 손해액)} \times 100\text{만원(B보험계약 가입금액)} / (400\text{만원} + 100\text{만원}) = 80\text{만원}$$

29-2) <예시>

- 피보험자 A의 과실 20%
- 피보험자 B의 과실 80%
- 총 보상책임액 : 100만원
- A의 보상책임액 : 20만원, B의 보상책임액 : 80만원

제30조(보험회사의 대위^{참고30-1)})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참고30-2)}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참고30-3)}.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1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관공, 경솔 또는 무경험**^{참고31-1)}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2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30-1) **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한다.
- 30-2)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일부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즉,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피보험자를 대신(대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총손해액 : 1억 / 과실 : 피보험자 70%, 제3자 30%

 - 보험금지급 : 5천만원
 - ① 보험금지급 후 남은 손해액 = 총손해액 - 보험금 = 1억 - 5천만원 = 5천만원
 - ②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제3자의 과실 = 3천만원
 - ↳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 ① - ② = 5천만원 - 3천만원(피보험자의 권리) = 2천만원
- 30-3)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란, 제3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지급기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정의합니다.
- 31-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관공, 경솔한**, 그리고 보험지식 및 정보가 부족한 등**무경험**)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합의를 하던 안된다든 점을 나타낸 것으로, 공정한 보험금 합의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입니다.

제33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2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입료**^{참고33-1)}나 **가집행**^{참고33-2)}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참고33-3)}(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참고33-4)}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4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38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참고34-1)}

제35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참고35-1)})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참고35-2)}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⁴¹⁾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37-1) **가입료**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기(매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 37-2)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33-1) **공탁금**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로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33-2) **회수청구권**이란 공탁금을 대출해준 보험회사가 갖는 권리로 공탁금(이자를 포함)에 대한 회수 권리를 말합니다.
- 34-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는 15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 보험계약이 성립을 하는 것이나,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이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 35-1) **부본**이라 함은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 39-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지급 및 지급 제한 사항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에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참고36-1)})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에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⁴²⁾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36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에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 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 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⁴²⁾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⁴³⁾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 별첨1. 관계법령 참조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 ^{참고38-1)} 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9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0조(계약 전 알릴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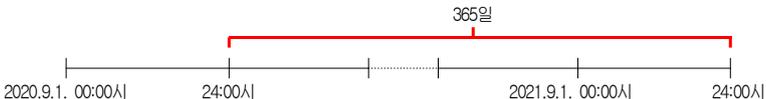
-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38-1) (예)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42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참고42-1)}하며 이하 같은)의 보존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3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참고43-1)}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4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 상속인^{참고43-2)}에게 이전합니다.

제44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참고44-1)}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42-1)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연대책무자가 됩니다.
연대책무자란 동일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발생한 여러 명의 채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 중 한 사람이 손해배상의 전부를 감당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상호간의 구상권이란 연대책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책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43-1) **양수인**은 타인의 권리, 재산 등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은 권리,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43-2)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44-1)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참고44-2)}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할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5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참고45-1)}
- ③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사업용자동차로서 2종·3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택시·개인소유 1종·2종·3종·4종화물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참고45-2)}
- ⑥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할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이미 납입한 보험료총액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해당기간 365(윤년:366) </div>

제46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참고46-1)}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44-2)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이후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5-1)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이후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5-2) <예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존 피보험자동차 보험계약) : 73만원
 - 보험자동차가 양도된 이후부터 보험사에서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 : 5일
 - 반환보험료 = 73만원 * 5일 / 365일(윤년 366일) = 1만원
- 46-1) 제5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54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47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8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참고48-1)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별첨1)}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4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5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5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5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참고48-2)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별첨1)}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채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채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참고48-3)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외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0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48-1)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해당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과거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 시점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해지와 구별됩니다.
- 48-2) 동일한 차령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이나 또는 공제계약(예 : 택시공제 등)을 보험기간이 같거나 보험기간 중 일부가 중복되도록 체결한 경우, 의무보험의 중복가입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48-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예를 들어 A(계약자)가 자신의 친구 B(기명피보험자)를 위해서 자동차보험을 체결해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약관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참고49-1)}로 제4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을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4조(피보험자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5조(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 제5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참고49-2)}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참고49-3)}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49-1)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통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 : 과실과 달리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대한 과실** : 과실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부족한 것을 말하며,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큰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9-2) 계약 전/후 알릴의무 위반 또는 피보험자자동차의 양도/교체로 인한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49-3) **법정대리인**이란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친권자, 후견인)를 말합니다.

④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참고49-4)}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0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과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과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제48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낸 전액
 - 3. 보험계약이 해지(제48조의2에 다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 2. 보험회사가 제46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참고50-2)}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운휴
 - 1. 보험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이하 “운휴기간”이라 합니다)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 운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시 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보험회사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 3.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기간의 개시일자과 피보험자동차의 명세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⑦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⑧ 보험회사가 제7항의 반환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49-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예를 들어 A(계약자)가 자신의 친구 B(기명피보험자)를 위해서 자동차보험을 체결해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약관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50-2)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과거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 시점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해지와 구별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1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2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23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2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별첨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별첨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환산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3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4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참고54-1)}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5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6조(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자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정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7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참고57-1)}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54-1)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개인 계약자에 한함, 법인지외)
- 57-1)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법원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법원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간주합니다.

제58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 지급 기준

※ 지급기준에 등장하는 '연령(나이)' 은 만 연령(나이)을 말합니다.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별표1-1)} 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p>(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p> </div>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족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후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 풀이></p>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별첨1)}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후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div>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별표1-1) **호프만 계수**란 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경우, 장래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 수익액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해당금액의 원금에서 단리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예) '21.4.1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현장사망, 피해자 연령 만 45세(75.7.14일생),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취업가능월수 231개월 (2040.07.14. - 2021.04.01. = 19년 3개월 13일(월 미만 일자는 버림)), 호프만 계수 161.5676
 → 300만원 × (1-1/3) × 161.5676 = 323,135,200원

나) 사업소득자

-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text{연간수입액} - \text{주요경비} - (\text{연간수입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제세공과금}] \times \text{노무기여율} \times \text{투자비율}$$

-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기준경비율이란 주요경비(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경비로써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말함)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세 기준경비율이며, 단순경비율이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소득세 기준경비율임
 3.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를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를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4.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5. 노무기여율은 85/100을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별첨1)}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별첨1)}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별첨1)}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text{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text{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별첨1)}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별첨1)}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에 한함.

<용어 풀이>

-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별첨1)}에 의한 통계작성지 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재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별첨1)}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

-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만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만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6) 외국인
 - (가) 유직자
 -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만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만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만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만62세부터 만67세 미만	36월
만67세부터 만76세 미만	24월
만76세 이상	12월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정상 만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만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4) 취업시기는 만19세로 함.
- (5) 외국인
 -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 (**)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자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i=5/12%, n=취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별행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p>가. 구조조사비용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2.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0</td> <td>5</td> <td>75</td> <td>9</td> <td>25</td> <td>13</td> <td>15</td> </tr> <tr> <td>2</td> <td>176</td> <td>6</td> <td>50</td> <td>10</td> <td>20</td> <td>14</td> <td>15</td> </tr> <tr> <td>3</td> <td>152</td> <td>7</td> <td>40</td> <td>11</td> <td>20</td> <td></td> <td></td> </tr> <tr> <td>4</td> <td>128</td> <td>8</td> <td>30</td> <td>12</td> <td>15</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p>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3. 휴업손해	<p>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 풀이></p> <p>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p> </div>																																								

<산식>

$$1\text{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취업가능연한 :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할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일수를 산정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 (1) 유직자
 -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 (2) 가사종사자
 -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 풀이>

① 가사종사자란 합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글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로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별항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 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p> <p>(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p> <p>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만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노동능력상실률</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정액</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45% 이상 50%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40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5% 이상 45%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4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7% 이상 35%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0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0% 이상 27%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6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4% 이상 20%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2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9% 이상 14%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0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 이상 9%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8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0% 초과 5%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50</td></tr> </tbody> </table> <p>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p>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 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 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2. 상실수익액	<p>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차야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육내 또는 육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참고문표1-2)}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별표1-2) **개호**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으로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애(노동능력 상실률 100%)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p>3. 가정간호비</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p>1. 수리비용</p>	<p>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 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p> <p>(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별행1)}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별행1)}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p>
<p>2. 교환가액</p>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p>3. 대차료</p>	<p>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인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연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별행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 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대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별행1)}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p> <p>다.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p>4. 휴차료</p>	<p>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p>5. 영업손실</p>	<p>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p>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p>	<p>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p>
<p>7. 견인비용</p>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p>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800만원	1,070만원	1,600만원	2,670만원
3급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4급	700만원	930만원	1,400만원	2,330만원
5급	500만원	670만원	1,000만원	1,670만원
6급	400만원	530만원	800만원	1,330만원
7급	250만원	330만원	500만원	83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360만원	600만원
9급	140만원	190만원	280만원	47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12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13급	80만원	110만원	160만원	270만원
14급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70만원

주)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별첨2)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별첨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p>1. 과실상계 <small>참고별표4-1)</small></p>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 I」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배상 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구분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p> <p>(*)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p>2. 손의상계 <small>참고별표4-2)</small></p>	<p>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p>
<p>3. 동승자에 대한 감액 <small>참고별표4-3)</small></p>	<p>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p>
<p>4. 기왕증</p>	<p>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p> <p>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p>

※ 참고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별표4-1)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손해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별표4-2) 손의상계란 사고로 얻은 피해자의 부당(이중)이득을 방지 내지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별표4-3) 동승자에 대한 감액은 동승자와 가해자의 인종관계, 운행목적, 동승경위, 무상동승으로 인해 운임의 면제 등의 이익을 동승자도 일부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동승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동승자가 얻은 이익만큼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함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는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보통약관 제22조 제2항 및 제26조 제5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CONTENT

제1편

운전자 연령 및 범위 관련

제1장 운전자 연령 관련

- 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3
- 2.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3

제2장 운전자 범위 관련

- 1.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54
- 2. 대리운전자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54
- 3. 지정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55
- 4.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56

제2편

보험료 납입

-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57
-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58

제3편

긴급출동서비스

- 1.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58
 - 1-1. 견인거리 확대 추가 특별약관 61
- 2.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고급형) 61
 - 2-1. 견인거리 확대 추가 특별약관(고급형) 64
- 3.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64

제4편

보장범위 변경

- 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66
- 2.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67
- 3.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67
- 4.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67
- 5. 렌트카 담보 특별약관 68
- 6.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69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69
8. 주차위반 피경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72
9.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73
10.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73
11. 대물배상 확대담보 특별약관	75
12. 자기차량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75

제5편

친환경/친서민 상품

1.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76
2. 전자문서 이용약정 특별약관	77
3.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78
4.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79

제6편

기 타

1.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80
2.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84

제1편 운전자 연령 및 범위 관련

제1장 운전자 연령 관련

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형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형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장 운전자 범위 관련

1.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택시, 개인소유 화물자동차 및 의무가입 건설기계로서 소유자를 보형증권 기재의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하고, 보형증권 기재의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운전자는 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형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형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형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형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대리운전업자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형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리운전자를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대리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소속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단,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 (2) 자동차 취급업자.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 (4)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③ 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보통약관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이외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지정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운전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지정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 및 그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명된 운전자 및 그의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44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조(□ 밖의 사항)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승용, 대여다인승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 임차인
 - 임차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임차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특별약관 「대물배상 확대당부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제4조(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차인의 사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이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조(□ 밖의 사항)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1」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편 보험료 납입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대인배상 1」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주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마지막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편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여자동차 및 1.4톤이하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긴급출동서비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나.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총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보험기간중 2회(단, 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1회), 1일 1회에 한하여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나. 단,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LPG 차량 및 전기자동차의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총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p> <p>나. 임시적인 조치 이외 비용(배터리 교환 비용 등)은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p> <p>다. 전기자동차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차량은 '1.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p>
4. 타이어교체 및 타이어펍크 수리서비스	<p>가. 타이어교체 서비스</p> <p>(1)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p> <p>(2) 단,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p>나. 타이어펍크 수리서비스</p> <p>(1) 피보험자동차가 지면에 닿은 타이어 트레드부분의 펍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펍크를 수리(타이어 1개당 서비스 1회 차량)해 드립니다.</p> <p>(2) 단, 다음 아래의 경우로 해당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1.긴급견인서비스' 또는 '4-가.타이어교체서비스'로 대체하여 드립니다.</p> <p>(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p> <p>(나) 타이어 펍크의 크기, 모양 및 위치에 따라 타이어펍크 수리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p> <p>(다)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p> <p>(라) 외산 타이어로 단순 펍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p>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속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p> <p>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립니다. 단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풀이></p> <p>1.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 함은 외산 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으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p> <p>2. 이 특별약관에서 추가비용이라 함은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p> </div>
6. 라지에이터캡(냉각수 주입구 마개) 교환서비스	<p>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라지에이터캡(냉각수 주입구 마개)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경우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p>
7. 휴즈교환서비스	<p>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p>
8. 오버히트(엔진과열) 응급조치서비스	<p>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응급 조치하여 드립니다.</p>
9. 무상정검서비스	<p>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정검(엔진, 하체, 전기부분을 말합니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긴급출동서비스 지정정비업체에 1~2일전 예약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10. 부동액보충서비스	<p>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p>

11. 긴급구난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p> <p>나.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비용이 청구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이라 함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 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할 때까지 소요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4. 외제차량 또는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하는 경우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div>
12. 기타부가서비스	<p>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 폐차대행, 구난서비스를 실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립니다.</p>

- ②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긴급출동서비스를 개인부담으로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서비스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 긴급구난서비스 및 잠금장치해제서비스의 제공 중에 부득이 발생한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서비스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2.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및 산간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② 자연재해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6조(서비스 횟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서비스 각 항목의 종류와 관계없이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

보험가입 기간	1년		6개월이상 ~ 1년미만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3개월미만
	전계약* 0회~3회이용자	전계약 4회이상이용자			
서비스 제공횟수	7회	5회	5회	2회	1회

주) 전계약 0회~3회 이용자 : 직전 보험계약의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서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계약으로 사용실적이 3회이하인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긴급출동서비스의 이용횟수가 이 특별약관 제5조에서 정한 이용가능 횟수가 되면 긴급출동서비스의 이용은 중지되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8조(특별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3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견인거리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0조(적용대상)

견인거리 확대 추가 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 1회에 한하여 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고급형)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여자동차 및 1.4톤이하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p> <p>나.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총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2. 비상급유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보험기간중 2회(단, 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1회), 1일 1회에 한하여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p> <p>나. 단,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p> <p>다. LPG 차량 및 전기자동차의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p>
3. 배터리충전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p> <p>나. 임시적인 조치 이외 비용(배터리 교환 비용 등)은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p> <p>다. 전기자동차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차량은 '1.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p>

<p>4. 타이어교체 및 타이어펍크 수리서비스</p>	<p>가. 타이어교체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2) 단,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p>나. 타이어펍크 수리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지면에 닿은 타이어 트레드부분의 펍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펍크를 수리(타이어 1개당 서비스 1회 차감)해 드립니다. (2) 단, 다음 아래의 경우로 해당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1.긴급견인서비스' 또는 '4-가.타이어교체서비스'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나) 타이어 펍크의 크기, 모양 및 위치에 따라 타이어펍크 수리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다)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라) 외산 타이어로 단순 펍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p>
<p>5. 잠금장치해제서비스</p>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p> <p>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립니다. 단,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풀이></p> <p>1.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 함은 외산 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으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p> <p>2. 이 특별약관에서 추가비용이라 함은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p> </div>
<p>6. 라지에이터캡 (냉각수 주입구 마개) 교환서비스</p>	<p>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라지에이터캡(냉각수 주입구 마개)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경우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p>
<p>7. 휴즈교환서비스</p>	<p>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p>
<p>8. 오버히트(엔진과열) 응급조치서비스</p>	<p>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응급 조치하여 드립니다.</p>
<p>9. 무상점검서비스</p>	<p>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엔진, 하체, 전기부문을 말합니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 지정정비업체에 1~2일 전 예약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10. 부동액보충서비스</p>	<p>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액을 보충하여 드립니다.</p>
<p>11. 긴급구난서비스</p>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p> <p>나.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비용이 청구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p><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이라 함은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 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할 때까지 소요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4. 외제차량 또는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하는 경우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p>
12. 기타부가서비스	<p>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 폐차대행, 구난서비스를 실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립니다.</p>
13. 오토케어서비스	<p>가. 차량진단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 지정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함)</p> <p><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 액, 타이밍벨트, 팬벨트,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기파이프, 소음기, 부동액(냉각수), 라지아태호스,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브레이크벨트, 타이어공압, 타이어마모, 예비타이어, 에어런(히터),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p> <p>나. 정비이력관리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 지정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p> <p>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 지정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단, 운반거리 10km초과할 때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부담이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p> <p>라. 수리비 정찰제 시행 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 지정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부품 및 공임정찰제를 실시하고, 기타 항목의 경우 일정 할인율을 차감한 가격으로 정비하여 드립니다.</p>

- ②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긴급출동서비스를 개인부담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서비스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 긴급구난서비스 및 잠금장치해제서비스의 제공 중에 부득이 발생한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서비스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 2.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및 산간지역
 -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② 자연재해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6조(서비스 횟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가입 후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서비스 각 항목의 종류와 관계없이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

보험가입 기간	1년		6개월이상 ~ 1년미만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3개월미만
	전계약* 0회~3회이용자	전계약 4회이상이용자			
서비스 제공횟수	7회	5회	5회	2회	1회

주) 전계약 0회~3회 이용자 : 직전 보험계약의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서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 특별약관에 가입한 계약으로 사용실적이 3회이하인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의 이용횟수가 이 특별약관 제5조에서 정한 이용가능 횟수가 되면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의 이용은 중지되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8조(특별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3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1. 견인거리 확대 추가 특별약관(고급형)

제10조(적용대상)

견인거리 확대 추가 특별약관(고급형)(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긴급출동서비스(고급형)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 1회에 한하여 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3.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정 승차정원 16인승초과 25인승이하의 대여승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급유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은행용으로 보험기간중 2회(단, 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1회), 1일 1회에 한하여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p> <p>나. 단,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p> <p>다. 피보험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2. 배터리충전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p> <p>나. 임시적인 조치 이외 비용(배터리 교환 비용 등)은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p> <p>다. 전기자동차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p>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p> <p>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립니다. 단,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풀이></p> <p>1.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 함은 외산 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으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p> <p>2. 이 특별약관에서 추가비용이라 함은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p> </div>

- ②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긴급출동서비스를 개인부담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서비스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 잠금장치해제서비스의 제공 중에 부득이 발생한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서비스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2.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및 산간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② 자연재해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6조(서비스 횟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가입 후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이 특별약관 제3조에서 정한 서비스 각 항목의 종류와 관계없이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

보험가입 기간	1년		6개월이상 ~ 1년미만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3개월미만
	전계약* 0회~3회이용자	전계약 4회이상이용자			
서비스 제공횟수	7회	5회	5회	2회	1회

주) 전계약 0회~3회 이용자 : 직전 보험계약의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서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에 가입한 계약으로 사용실적이 3회이하인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이용횟수가 이 특별약관 제5조에서 정한 이용가능 횟수가 되면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이용은 중지되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8조(특별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편 보장범위 변경

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3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II」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고당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는 사고일차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사고는 '1천만원'
- 2016년 4월 1일부터의 사고는 '2천만원'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통약관 제37조(보험기간)에 따른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및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양수인은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정비되어 있는(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3.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공작용자동차(이하 '공작차'라 합니다.) 캐터필러(컷팅엣치, 엔드비트를 포함), 배도판 버킷(딥퍼를 포함), 포오크, 삼날, 로울러 등 작업 중 언저나 땅에 닿는 부분과 드로프행어, 디어젤행어, 파일드라이버(채크,리더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의하여 교환 장착하는 부분품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2조

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오드, 와이어, 호오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속품은 자동차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여사업용자동차**로써 10.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대여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및 10.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전부손해**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차량교체(대체)시 실제 발생한 차량등록세 및 취득세를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차량교체(대체) 후 실제 발생한 차량등록세 및 취득세 관련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2.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렌트카 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여사업용자동차**로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이하 '대여자동차'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대여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대여자동차의 제공기간 및 비용지급)

① 회사가 사고마다 대여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 대여자동차의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능한 경우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외국산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0일을 한도로 실제로 대여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대여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자동차를 제공할 때 대여비용의 부담은 회사로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대여자동차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대여자동차의 대여비용 상당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제공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여자동차를 사용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제1항의 대여자동차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대여자동차의 대여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대여비용 상당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대여하는 경우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를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대여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소 및 회수장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장소로 합니다.

제5조(대여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에 따라 대여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대여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대여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 보상한도는 대여자동차 제공 전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계약 및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의 보상책임 기간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한도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대여자동차를 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때까지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대여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대여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신규로 등록된 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신규 등록된 일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3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고를 전부손해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1. 한 번의 사고로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수리비에 한하며 간접손해는 제외합니다)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 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신차가액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교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교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이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 이거나 택시, 화물자동차, 특정용도자동차, 특수작업용자동차, 건설기계로서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대여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손해^{(*)1}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2. 위 제1호의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제1호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위 제1호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라.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손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

인 다른 피용자

제5조(피보험자)

①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1.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대여 받은 임차인 및 임차인의 배우자(이하 “임차피보험자”라 합니다)(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이들이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임차피보험자로 봅니다.
2. 임차피보험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임차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②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가 아닌 경우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3.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6.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7.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제8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 특별약관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합니다.)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 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견인개시한 때 람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대물배상」에 해당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견인차량의 시건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제4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아래 제2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 "사고"라 함은 보통약관 제1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외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 가. 타물체⁽²⁾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³⁾로 인한 손해
 -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폭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2)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이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3)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한다) 또는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4. 경미한 손상⁽⁴⁾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⁵⁾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4)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5)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은 보통약관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0.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보통약관 제7조 제1호의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제1호 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를 말한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한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1. '실제손해액'이란 이 보험계약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소송,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1)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과 제2절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유의 사항>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1. 대물배상 확대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대물배상」과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1 사고당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대물배상」의 규정에 따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12. 자기차량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1종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건설기계이고,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침수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 외에 다음 각 항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이란 아래의 장소를 말합니다.

-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차장 및 주차가 허용된 곳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 3.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허용된 곳
- 4.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편 친환경/친서민 상품

1.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2호 다목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품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품품의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품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1.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 배터리 등 부품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품품의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품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분품(중고부분품 또는 재제조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와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분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분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넷,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기능), 전·후방 센서)
2. 재제조부분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분품(FEMAN제품)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제22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분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분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1목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2. 이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1목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분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분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분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개발원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분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전자문서 이용약정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 자료**를 회사가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자료**란 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안내문, 만기안내엽서 등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방법을 말합니다.
 - (1) 전자우편
 - (2) 휴대폰(모바일)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제2조(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할 때 보험계약 자료 수령을 위해 선택한 전자적 방법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전자우편 : 보험계약 자료를 받을 전자우편의 수령처(이메일주소)
 2. 휴대폰(모바일)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 핸드폰 번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
- ② 위 제1항에서 알려진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에 정보에 따라 보험계약 자료를 교부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료의 교부)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알려진 정보에 따라 보험계약 자료를 지체없이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보험계약 자료를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재교부하며 두 차례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 자료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자료의 재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보험계약 자료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각종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편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계약자는 할인받은 보험료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 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 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3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 또는 범위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환입)

-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

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OEM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액)을 초과하거나,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는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금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료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

-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4조(전환 취소)

-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제6편 기타

1.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6종 건설기계 및 일반건설기계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가입대상)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계약에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대물배상」 관련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주류, 담배와 그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족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제6조(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보통약관 제32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제7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제8조(가입대상)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계약에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매설물을 파손하여 생긴 직접손해로 말미암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공사개시 전에 관련 기관에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대물배상」 관련 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주류, 담배와 그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피보험자)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전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자동차 취급업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2조(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보통약관 제32조(합의 등의 협조, 대행)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제13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운송 중 위험 담보

제14조(가입대상)

「운송 중 위험 담보」는 이 보험계약에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합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중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가 주차차 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 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제17조(피보험자)

운송 중 위험담보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18조(비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19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아웃리거 필수설치 담보

제20조(가입대상)

「아웃리거 필수설치 담보」는 이 보험계약에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가 장착되어 출고된 건설기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아웃리거(OUTRIGGER)란 타이어식 기종기와 같이 끌어올리는 물체의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차체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장치로 지면과 밀착되는 다리로서 통상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1조(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할

니다.)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 운행 및 작업장내 이동을 위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 기계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제2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0조(보험회사의 대위)의 경우에 피보험 자동차를 운송하는 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회사의 대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취급업자'로 봅니다.

2.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2. 피보험자의 동의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3.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의 취소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첨1.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12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정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88조 및 제56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인 학교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소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부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사·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들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들에게 「상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기(診療報酬)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기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돌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3.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입점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이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가족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대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우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意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意的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제공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제공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들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회사들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릴 수 있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할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6.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력·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종 학교
 -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인민
 -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조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자료를 말한다.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항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충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기목과 나뭇잎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나뭇잎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나뭇잎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기목부터 나뭇잎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기목부터 나뭇잎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사·도시차는 해당 사·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경시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기행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령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11.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大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처벌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여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일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13.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정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1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 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 병원
 - 다. 한방 병원
 - 라. 요양 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제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 병원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선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동행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동행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5.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사·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쯤만 경우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쯤만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車輛)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効)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처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사·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사·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사·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사·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시절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해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 ⑪ 사·도지사기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kw)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kw)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기타형에 한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속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1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상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상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상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민법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4. 「금융상품지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지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거나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인을 하는 것
 -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지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지문업자」란 금융상품지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지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지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제3항, 「농협공동조합법」 제16조의11 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판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지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협공동조합법」 제161조의2 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금융회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 다.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라.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 마.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경영여신업자
 -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모집인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허가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지문업자의 지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지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지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 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별첨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구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리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추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추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외상·괴사상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의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장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심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안정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통이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바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지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의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장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추 손상으로 불안정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상해 등급	한도 금액	상해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관절의 손상으로 족관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막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izzi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디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디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과시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인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인와 골절 재건술과 시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기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이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지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의손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의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인연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인연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미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상해 등급	한도 금액	상해내용
		5. 쇠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쇠골인대 및 오구 쇠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디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디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황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원골 과상부 또는 상원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 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디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디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인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태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태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태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태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태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5. 외상성 상부관절의손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7. 하지 3대 관절의 활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태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태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태(깊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태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태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맥을 동반한 상태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태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태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 한다)
	일반 외상과 치료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인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농종, 거미막 농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인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진성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 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기(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원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안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상하지	공통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영역	내용
	<p>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p> <p>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p> <p>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를 준용한다.</p> <p>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수축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상지	<p>상부관절손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p> <p>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물관전골 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p> <p>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간대 및 오구 쇄골간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간대 및 오구 쇄골간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p>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p>
하지	<p>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p> <p>슬관절 심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심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심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p> <p>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p> <p>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p> <p>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p> <p>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심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p> <p>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별첨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구분	보험 가입금액	신 체 장 애	비 고
1급	15,000만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급	13,500만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손가락을 잃는 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의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의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급	12,000만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상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상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관절 또는 제 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급	10,500만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급	9,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컷바께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 체 장 애	비 고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 족지 관절 또는 제 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급	6,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곽부 장치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죽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오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8급	4,5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컷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 체 장 애	비 고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0급	2,7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컷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점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 눈의 근점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오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 체 장 애	비 고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00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MEMO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콜센터 1688-1688 www.heungkukfire.co.kr